

행정자치부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02)731-2130/전송731-2853/담당 김기현

문서번호 감사16800 -

시행일자 '98. 4.

(제 1 안)

받 음 내부결재
참 조

취급		장 관	국무총리
보존	년		
차 관	1998.4	김정길 10/4	국무총리
감사관	국무총리	차 관 보 김정길	
담당관	한	기획관리실장 오정호	
기 안	체 학 전		협조

제 목 '98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안)

행정감사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립·시행하고자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98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안) 1부. 끝.

(제 2 안)

받 음 받는 곳 참조

참 조 기획관리실장, 감사관

제 목 '98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 통보 (국무총리지시 제1998- 6 호)

1. 국가적인 경제난국의 극복과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직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쇄신하여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에 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98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 1부. 끝.

국 무 총 리

받는 곳 가14~19, 31~47, 51~66, 나, 다.

〈운영지침〉

행정감사

○ 과다·중복감사의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 종합감사주기 지정조치의 지속적 이행

- 중앙행정기관 : 1 ~ 2년 ⇒ 2년
- 재외공관 : 2 ~ 4년 ⇒ 4년
- 광역자치단체 : 1 ~ 2년 ⇒ 2년
- 기타 행정기관 : 1 ~ 3년 ⇒ 3년

○ 감사생략제 준수로 중복감사 지양

○ 계층제 감사의 철저 이행

○ 합동감사운영으로 감사 효율성 제고 및 일선기관 수감부담 경감

지도방문

○ 지도방문의 억제로 피방문기관의 부담경감 및 자율성 신장

○ 과다한 지도방문 억제를 위한 지도방문 실시기준의 준수

○ 각 기관별 지도방문조정심의회를 통한 지도방문의 조정·통제

○ 지도방문 관련기록부의 관리 철저

〈행정사항〉

- 「'98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의 소속기관 전파 철저
-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의 내실화 도모와 개선사항의 발굴을 위하여 반기별로 운영실태 점검

'98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운영지침(안)

<행정감사규정, 대통령령 제 14499호>

〈목 적〉

- ◆ 국가적인 경제난국의 극복과 작지 않은 욕구를 적은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 ◆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공부문 기관을 획기적으로 쇄신하여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의 운영방향과 지침을 정함

〈운영중점〉

□ 국가경제의 회생과 경쟁력 제고 지원감사 전개

-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발굴·개선 (비효율적 원천제거)
- 선심성·전시성 행정의 낭비요인 제거 (투명한 회의관련 정착)

□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상평화의 확행

- 예방적 차원의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예방 등을 통한 행정공백 방지)
- 수범사례의 적극 발굴·홍보 (적극적 업무처리자 경미한 과오 관용)

□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 및 친절도 향상

- 무사안일한 행정편의 민원처리 행태 얻어내기 (법무·평가, 책임전가행위)
- 대민행정분야 민원인 만족도 제고 (친절도, 생활도 충족·관리)
-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적극적·봉사적인 관무행태 창출
☞ “공직사회가 이제는 달라졌구나”하는 느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유도

□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감사 중심의 행정감사 운영

- 합법성 위주 감사에서 「예방」과 「개선」 위주의 활동감사 운영

□ 민생·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국민생활 불편사항의 우선해소 (환경, 건축, 대상, 이초질서 확립 등)
-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예방 감사활동 강화 (공사 단계별 점검)

*總括監督 및 檢察官による 監督

[국무총리지시 제1998 - 6호]

—<1998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

1998. 4.

행정자치부

순서

I. 목 적	1
II. 운영중점	1
1. 국가경제의 회생과 경쟁력 제고 지원 감사 전개	
2.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상필벌의 확행	
3.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 및 친절도 향상 제고	
4. 민생·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5.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감사 중심의 합동감사 운영	
6.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예방감사의 적극 추진	
III. 운영지침	6
[행정감사]	
1. 과다·중복감사의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2. 감사생략제의 준수로 중복감사 지양	
3. 계층제 감사의 철저 이행	
4. 합동감사운영으로 감사의 효율성 제고 및 수감부담 경감	
[지도방문]	
1. 지도방문의 억제로 피방문기관의 부담경감 및 자율성 신장	
2. 지도방문 실시기준	
3. 지도방문 조정·통제	
4. 지도방문 관련기록부 관리 철저	
IV. 국가감사활동정보시스템(NAIS) 운용의 활성화	13
1. NAIS 운용을 위한 자료입력	
2. NAIS의 활용 철저	
3. NAIS 운용상의 유의점	
V. 행정사항	15
1.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기록관리	
2. 시정·개선 요망사항	
3. 표본지방자치단체의 지정	
4.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실태 점검	

I. 목 적

- 국가적인 경제난국의 극복과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 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 「국민의 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직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쇄신하여 진정한 국민의 봉사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 각급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의 운영방향과 지침을 정하고자 함

II. 운영중점

1. 국가경제의 회생과 경쟁력 제고 지원감사 전개

가.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발굴·개선

-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의 완화 및 민원 해소
- 완화 또는 폐지된 규제 등의 이행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규제 완화의 실효성 확보
- 비리발생 빈발업무에 대하여는 구조적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비리소자를 원천적으로 제거

나. 선심성·전시성 행정의 낭비요인 제거

- 각급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각종행사비, 홍보비 등 소모성 경비의 예산편성 및 그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여 정직하고 투명한 회계관행을 정착시키고 예산집행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예산 운용의 건전화 도모
- 각종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 및 과다한 행사지원, 치적홍보, 선물 제공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선심성·전시성 행정의 낭비 요인 발굴·제거

다.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강화로 생산성 제고 유도

- 산하단체·공기업 등에 대한 감사의 강화로 예산낭비, 기구 남설 등 방만한 운용사례를 적출하여 경영혁신 유도

2. 전환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및 신상필벌의 확행

가. 구조적·고질적 잔존부조리 척결

- 관련업체·단체와의 구조적 유착비리, 관행적 금품수수, 이권개입 등의 고질적 잔존 부조리 척결
- 부정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 유도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의 철저이행
(국무총리훈령 제305호)

나. 예방적 차원의 지속적인 공직기강 점검 실시

- 취약분야 업무담당자에 대한 집중감찰활동 및 취약시기 예방감찰 활동 강화
- 정권이양, 지방선거 등을 틈 탄 기강해이 및 행정공백 방지
- 시테크제 등 합리적인 복무관리 정착을 위한 근무실태의 지속적인 점검
- 무사안일, 보신주의 등에 의한 업무지연, 책임회피 등 소극적 근무 행태는 엄중조치하되,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은 최대한 관용조치

다. 선행, 수범사례의 적극 발굴·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 부조리·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향상 및 예산절감·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례 적극 발굴·포상 추천
- 수범사례의 적극적인 전파로 적극적,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분위기 조성 유도

3. 대민행정 부조리 근절 및 친절도 향상 제고

가. 무사안일한 행정편의 민원처리 행태 엄중조치

- 법규를 빙자한 소극적 처리 또는 처리기피행위
- 불필요한 질의·협의 등 책임전가 행위
- 민원서류의 정당한 이유없이 접수거절, 불필요한 보완요구, 경미한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 및 지연처리 행위
- 상급관서(상급자)의 지시에만 의존하여 처리하는 수동적 업무처리 행위
- 정당한 민원임에도 주변여론, 반대민원 발생우려 등의 사유를 내세워 민원처리를 미루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

나. 대민행정분야 민원인 만족도 제고

- 대민부서 공무원의 친절도, 업무처리의 신속성, 청렴도 등에 대한 수시점검 및 조사로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민행정 만족도 제고
- 점검·조사결과 민원인의 지탄을 받는 부서와 공무원은 집중관리 및 엄중조치

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적극적·봉사적인 근무행태 창출 유도

- 「공직사회가 이제는 달라졌구나」하고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모된 공직분위기 조성 유도
- 국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공직근무행태로의 일대 전환을 위해 능동적 업무수행과정에서 초래된 과오에 대하여는 관용 조치

4. 민생·취약분야 감사활동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가. 국민생활 직결분야 중점감사 실시

- 환경·건축·위생 등의 민생분야 중점 감사 실시
- 과세, 인·허가, 권리설정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에 대한 상시 점검
- 행락질서, 쓰레기 투기 등 생활 기초질서 확립 분야 업무소홀에 대한 감사실시
- 기타 국민생활 불편사항의 우선적 해소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

나.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 감사활동 강화

- 주요시설공사의 단계별 점검으로 부실시공 예방
-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지속적인 점검
 - 교량, 터널 등 주요 공공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가스, 석유화학 시설, 노후아파트,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등 대형사고 위험발생 우려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사고예방
 - 다중이용시설물 관리자의 근무기강확립으로 각종 안전사고 및 대형사고 사전 예방

5. 개선대안을 모색하는 정책감사 중심의 합동감사운영

가. 감사방향의 전환

- 단편적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여 문책하는 합법성 위주의 감사에서 유사한 문제의 재발과 동일한 문제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과 「개선」 위주로의 감사 방향 전환
- 집행부분(지방)에 대한 일방적 감사에서 기획부분(중앙)의 문제점 까지 찾아내어 균원적 개선 대안 모색

나. 정책감사의 주요대상

- 각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추진하는 역점 시책
- 주민과 기업 입장에서 불만이 많은 민원사무, 기업관련 인허가 업무, 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시혜업무 등 민생분야
- 계절적 시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각별히 관심을 두고 확인·점검이 필요한 분야
- 자치단체장이 의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 중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노출된 사업 등

6. 적극적 행정을 유도하는 예방감사의 적극 추진

가. 새로운 「감사마인드」의 정립

- 즉흥적·투망식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롭고 발전적인 「감사마인드」의 정립
- 감사자와 피감사자간 하향적 감시체제에서 수평적 지원관계로의 상호 인식 전환

나. 주요업무에 대한 집중감사 및 일상감사의 강화

-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계획→ 실시→ 완료→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계통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검토하여 시정 및 개선대안 모색
- 주요업무 등에 대한 일상감사의 실시로 시행착오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
 - 감사부서가 설치된 각 행정기관은 기관실정에 적합한 일상감사 지침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
 -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시행 전 뿐만 아니라 시행 중에도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 및 부조리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행정력 및 예산 낭비를 사전 예방

III. 운영지침

[행정감사]

1. 과다·중복감사의 예방을 위한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가. 종합감사주기 지정조치의 지속적인 이행

- 중앙행정기관 : 2년
- 재외공관 : 4년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도 교육청 : 2년
- 기타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 3년

나. 행정감사계획의 조정·통제 강화

- 감사계획의 조정·통제 방향
 - 종합감사주기 연장조치의 지속적인 이행 및 확인으로 과다한 감사 지양
 - 종합·부분감사는 반드시 사전에 조정·통제기관에 의한 조정을 받은 후에 실시
 - 비리 빈발 취약분야 업무에 대하여는 부분감사의 적극 활용으로 징계시효의 도과등 감사주기 준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
 - 국가감사활동정보시스템(NAIS)의 적극 활용으로 특정기관, 특정지역에 편중된 감사실시 지양
 - 수감대상기관의 연간 최대 수감일수가 100일 이내가 되도록 실시하되,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 다만, 대형사고 및 긴급사태의 발생으로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거나 정부의 신뢰에 손상을 줄 협안이 발생한 경우, 행정감사계획의 조정 · 통제절차에 구애됨이 없이 즉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사후에 조정 · 통제기관에 실시일시 · 실시사유 · 대상기관 · 감사 및 조사내용 · 감사관수 · 감사기간 · 처분결과등의 사항을 보고

○ 감사계획 조정 · 통제 기준

- 감사목적의 타당성과 필요성
- 종합감사주기 연장조치의 이행 여부
- 감사내용 및 감사기관 중복 여부
- 감사계층제 실시 여부
-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의 적정성 여부
- 감사인원의 적정편성 여부
- 합동감사 또는 표본감사로 감사목적 달성가능 여부 등

2. 감사생략제의 준수로 중복감사 지양

-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 감사 생략
- 당해 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감사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활용
- 일상감사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범위안에서 사후감사(종합 · 부분감사) 생략
- 부분감사 실시의 경우, 대상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표본감사 실시

3. 계층제 감사의 철저 이행

-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감사대상업무에 대한 제1차 감독권을 가진 기관이 행함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 제2차 이하 소속기관에 대하여 직접 감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차 소속 감사부서와 협의하여 중복감사 방지

4. 합동감사운영으로 감사 효율성 제고 및 수감부담 경감

가. 합동감사의 대상 및 조정 · 통제

- 다수의 행정기관이 동일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합동감사의 적극 활용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동 감사 실시

나. 합동감사반의 운영

- 합동감사반원의 자격기준
 - 감사반원은 행정감사규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당해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기관을 대표하여 실효성있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선발함
(가급적 5급 공무원이상으로 선발)

○ 합동감사 결과 처리

- 합동감사 결과 행정상·재정상·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를 위하여 합동감사 참여기관 감사관계관으로 구성된 『합동감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합동감사협의회』의 기능

-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운영지침에 따른 감사방향 및 수행과정의 현안문제 협의·결정
-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감사를 위한 협의·결정
- 감사결과 처분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를 위한 처리기준의 협의·결정
- 기타 합동감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의 협의·결정

[지도방문]

1. 지도방문의 억제로 피방문기관의 부담경감 및 자율성 신장

가. 불요불급한 지도방문 억제

- FAX·전화·문서에 의한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대체가능한 지도방문의 금지
- 유사업무 또는 관련업무에 대하여 다수 부서에서 동일기관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실시할 경우에는 분기별로 합동 지도방문 실시
- 1개 기관에 대한 1회 지도방문은 원칙적으로 1일이내에 실시
- 업무성격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지역·기관·시기에 편중실시 지양

나. 피방문기관과의 사전협의로 지도방문의 효과 제고

- 방문기관은 피방문기관에 방문일정·목적·범위·준비사항 등을 방문 전에 통보
- 중앙행정기관, 시·도 등 방문기관은 피방문기관의 수감상황 등을 참작하여 방문계획을 조정하거나, 인근 기관을 방문하는 등 피방문 기관의 수감부담 경감
- 피방문기관은 과다·중복방문으로 판단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계획의 조정을 건의

2. 지도방문 실시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그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에 대한 지도방문 실시 기준

- 「'97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의 <별첨1>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합된 행정기관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능(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의 수준에 준하여 실시후 그 결과를 반기종료 후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방문 실시기준

- 각 부처별 지도방문은 「'97년도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지침」의 <별첨2>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되,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합된 행정기관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능(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던 기관의 수준에 준하여 실시후 그 결과를 반기종료 후 30일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
- 지도방문 실시기준 초과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방문 실시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포함)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도방문을 실시하고자 하거나,

-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 예정일 15일 전 까지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

3. 지도방문 조정 · 통제

가. 지도방문 심의 · 조정체계의 확립

○ 중앙행정기관

- 지도방문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각기관에 설치된 지도방문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 시 · 도 및 시 · 도교육청

- 중앙행정기관에 준하여 운영 및 실시

○ 시 · 군 · 구 및 교육청

-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의 결재 후 지도방문 실시

나. 지도방문 조정 · 통제기준

○ 지도방문실시기준 범위내 여부

○ 전화 · 문서에 의한 지시 또는 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 여부

○ 특정지역, 기관, 시기의 편중 여부

○ 지도방문 인원, 기간의 과다 여부

○ 동일 · 유사목적으로 다른기관(다른 부서)에서 이미 지도방문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 합동지도방문 실시가능 여부

○ 기타 불요불급한 지도방문 여부

다. 지도방문 조정 · 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

- 회의참석, 자료수집(정책자료 제외), 교육훈련, 여론청취, 고시시행 등 지도 · 확인 · 점검의 목적이 아닌 기관 방문
- 민원사안 처리를 위한 관련기관 방문

- 재난사태(산불진화, 수해복구, 지진발생 등 급박한 사태)의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방문
- 공사 진척사항 확인 등 현장만을 방문하는 행정수행의 경우
- 기타 기관장 특별지시사항(근거 첨부요)
 - ※ 조정·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자율적으로 수행

라.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심의기능 강화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방문의 경우 기관별 연간 실시기준(기관수) 범위내에서 승인
- 중앙행정기관의 그 소속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제외)에 대한 지도방문은 기관별 연간 실시기준(기관수) 범위내에서 승인
- 국가감사활동정보시스템(NAIS) 검색활용으로 특정기관 및 특정지역에 중복·편중된 지도방문 예방
- 최소한의 기관, 인원, 기간으로 조정하되, 불요불급한 지도방문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도방문 목적, 대상기관을 엄격하게 심사
- 지도방문 심의 승인없는 지도방문은 기관장 책임하에 엄격히 통제

4. 지도방문 관련기록부 관리 철저

가. 지도방문실시기록부는 지도방문 조정·통제부서에서 승인 후 집중기록관리

- 승인된 지도방문 계획을 결재일자순으로 지도방문실시기록부에 기록
- 지도방문 종료 후 출장복명서 또는 실시결과보고서 등을 통보받아 기록·유지함으로써 적정실시 여부 및 차기 지도방문시 유사·중복 방문 예방

나. 지도방문수감기록부는 지도방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집중 관리

- 지도방문수감기록부의 기록은 방문책임자가 기록 서명 후 피방문 부서의 책임관이 확인 서명함으로써 결과 보고시 누락 예방
- 지도방문이 아닌 단순방문시 피방문부서의 책임관이 비고란에 구분 기록함으로써 자료관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시 혼란 예방

VI. 국가감사활동정보시스템(NAIS) 운용의 활성화

1. NAIS 운용을 위한 자료입력

가. NAIS 운용 목적

- 각 행정기관의 감사 및 지도방문의 계획과 실적을 전산관리하여 특정기관에 대한 감사증복 또는 편중을 예방하고 사전에 조정함으로써 감사 및 지도방문의 적정화 도모

나. 자료입력 부서 및 입력사항

- 총괄부서 : 행정관리담당관(국가기관) 또는 기획관(자치단체)
- 전담입력부서
 - 감사담당관(자치단체는 감사실) : 감사활동사항
 - 행정관리담당관(자치단체는 기획관) : 지도방문 사항 등
- 입력대상업무
 - 감사 : 종합감사, 부분감사
 - 지도방문 : 지도·확인·점검 사항
 - 기타 : 기강점검, 민원조사, 자료수집, 교육훈련 등으로 구분

○ 입력방법

- 당해연도 감사 및 지도방문계획을 조정·통제부서로부터 승인 받은 즉시 입력한 후 실시
- 승인된 사항(피방문기관, 기간, 인원)이 신규, 추가, 실시 등으로 변경된 경우 매월말에 수정입력

2. NAIS의 활용 철저

가. 감사 및 지도방문의 합리적 조정자료로 활용

- NAIS검색으로 특정기관 중복, 편중 시정
- 유사한 시기에 같은 기관의 다수 부서에서 동일기관 감사 및 지도 방문시 합동으로 실시
- 기관단위로 감사 및 지도방문 시기 조정

나. 감사 및 지도방문실태 분석 및 개선자료로 활용

- 불요불급한 감사 및 지도방문 제한
- 성과가 미흡한 감사 및 지도방문 폐지
- 과다, 편중 실시한 기관에 대하여는 주의 촉구 및 규모 감축

3. NAIS 운용상의 유의점

가. 감사 및 지도방문의 합리적 조정·자료로 활용

나. 감사 및 지도방문은 승인 후 실시하며 승인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실시 종료 후 수정 입력·통보 (미실시한 경우 입력 내용 수정)

다. 감사 및 지도방문 실적은 수감기관의 “수감대장” 및 “지도방문수감기록부”的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라. 총괄관리부서는 전담자를 지정하여 자료관리의 정확성 및 보안유지 철저

V. 행정사항

1.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기록관리

- 감사카드 및 지도방문기록부의 작성 · 비치
 - 행정감사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행정기관에는 『감사 카드』를, 동규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관과 피방 문기관에는 『지도방문기록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관리하여야 함
- 행정감사 또는 지도방문을 실시하는 기관의 책임공무원은 피감사 기관(피방문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감사카드』 또는 『지도방문수감 기록부』에 소정사항을 직접 기재하여 감사사항 또는 지도방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시정 · 개선 요망사항

- 각 중앙행정기관, 시 · 도 및 교육청은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 지침”을 소속기관에 전파하여 정부의 운영방침이 모든 공무원에게 주지될 수 있도록 조치
-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 및 교육청은 감사실시기관이 시정 · 개선 요구한 사항과 자체감사결과 시정 ·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 개선 조치하고 소속기관에 대하여도 개선하도록 조치
- 행정감사(종합 또는 부분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조정 · 통제 기관(중앙행정기관 → 행정자치부장관, 기타 행정기관 → 직근상급기 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 자율통제)에 사전에 감사계획을 제출하여 조정을 받은 후 실시하고 임의로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행정감사계획의 제출기일 준수 (행정감사규정 제12조)
-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결과보고서의 통보기일 준수
(동규정 제30조 및 제31조)

3. 표본지방자치단체의 지정

-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자료수집 대상 표본지방자치단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함
- 지정된 표본지방자치단체는 행정감사규정 제30조(감사결과보고) 및 제31조(지도방문결과보고)에 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함
☞ 보고서식은 『행정감사업무편람』의 [별표1] <서식 사> 중 「감사·지도방문실시 및 수감상황 조사표」에 의함
- 표본지방자치단체(32개 기관)

도(4)	시(4)	군(8)	읍(8)	면(8)	비 고
경기도	수원시	화성군 양주군	태안읍 회천읍	향남면 주내면	
충청남도	천안시	연기군 홍성군	조치원읍 홍성읍	전의면 갈산면	
전라남도	순천시	담양군 영암군	담양읍 영암읍	청평면 군서면	
경상북도	경주시	의성군 울진군	의성읍 울진읍	비안면 기성면	

4.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실태 점검

-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감사 및 지도방문 운영의 내실화 도모와 개선 사항의 발굴을 위하여 반기별로 중앙행정기관 및 표본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